

동두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3. 6. 26 동두천시장이 제출

나. 회부일자 : 2003. 7. 1

다. 상정일자 : 제127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제4차, 제5차 본회의 상정, 토론

제6차 본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생연 택지개발지구인 생연2동과 불현동의 법정동 경계는 조정(2001. 5. 4)하였으나 현재의 행정동 경계가 불분명한 동안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 행정의 효율성 도모와 향후 입주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생연 택지개발지구내 법정동인 생연동 지역을 생연2동으로 지행동 지역을 불현동으로 행정동 경계를 조정

○ 편입면적

편 입 되 는 지 역		편 입 받 는 지 역
생연동(52필지 62,507㎡)	⇒	생 연 2 동
지행동(30필지 14,383㎡)	⇒	불 현 동

3.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개정조례안은 생연택지개발지구내 생연2동과 불현동의 행정동 경계가 불분명하여 법정동이 생연동 지역은 생연2동으로, 지행동지역은 불현동으로 행정동 구역의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에는 위배되지 않으며 향후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 등을 감안하여 시 전역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론요지

○ (홍석우 의원)

본 안건에 대하여 첫 번째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은 법정동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향후 분동을 염두에 두는 것인데 동두천시에서 2001년도에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면서 신도시의 개념을 무시한 채 개천을 따라서 법정동을 조정한 흔적이 보이고 있음. 예전의 지형천을 따라서 경계를 이어지고 있는 생연택지개발 지역을 따라서 경계를 지으면서 주민의 행정편의는 무시한 채 단순히 법정동으로 가자는 논리 하에 바로 앞에 있는 생연2동사무소를 뒤로하고 경원선 전철을 건너고 또한 국도3번 평화로를 건너서 20여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불현동으로 가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불합리하게 조정되어 있음. 두 번째 본 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안은 향후 분동을 하기 위한 행정구역 조정보다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행정구역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생연택지개발지구는 생연2동에 편입시키고 송내택지개발지구는 불현동에 편입시켜 지역의 인구 및 지역간 균형발전에 조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 (홍운섭 의원)

본 안건은 현재의 행정동 경계가 불분명한 동안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 행정의 효율성 도모와 향후 입주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코자 개정하려는 것이나, 해당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이를 토대로 심층 검토한 후 의회에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정적 절차가 미흡하였으며, 또한 의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의회에 제출되는 등 본 회기중에 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나 현재 7월말 예정된 부영아파트 입주민의 행정서비스는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 안건을 보류시킴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의장)

홍운섭 의원의 보류동의 취지설명과 같이 집행부에서 본 안건을 제출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향후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본 회기에서는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을 보류하고자 함.

6. 심 사 결 과 - “ 계 류 ”

- ※ 사유 ① 집행부의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불충분
② 안건에 대한 의회의 검토시간 부족